



제 429국회 (정기회)
제 10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적용대상에 신탁 외 상호금융업권도 추가〉

■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42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금융회사의 정의 및 업종구분	3
2.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	12
3. 금융분쟁조정제도 적용	16
4.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요구	21
5.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	30
6.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	3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8. 19.
3. 회 부 일 :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금융회사의 정의 및 업종구분

□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및 조합·금고로 확대하고, 각 조합·금고 및 중앙회를 업종 구분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등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가. ----- ----- -----제3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 ----- ----- -----한국산업은행, 농 협은행-----

<u>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u> <u>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u> <u>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u> <u>포함한다. 이하 같다)</u> 나. ~ 마.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 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 10. (생략) <신설> <신설>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	-----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u>신용협동조합법</u>」에 따른 신 <u>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u> <u>앙회</u> 사.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조 <u>합 및 중앙회</u> 아.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따른 <u>조합 및 중앙회</u> 자. 「<u>산림조합법</u>」에 따른 조합 <u>및 중앙회</u> 차. 「<u>새마을금고법</u>」에 따른 금고 <u>및 중앙회</u> 카. -----차목까지의- ----- ----- ----- 7. ~ 10. (현행과 같음) 11. “<u>중앙회</u>”란 제6호바목의 신용협 <u>동중앙회 또는 같은 호 사목부터</u> <u>차목까지의 각 중앙회 중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12. “<u>조합</u>”이란 제6호바목부터 차목 <u>까지의 신용협동조합, 각 조합</u> <u>또는 금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것을 말한다.</u>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guide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structured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회: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17. 제2조제12호에 따른 조합: 금융
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법 시행령¹⁾에서는 동 법령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법 제12조제1항²⁾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은행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

-
-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사업 부문 한정),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현행법 제4조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등 금융회사의 업종을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³⁾.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구 분	금 용 회 사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경영여신업자 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회사, 투자권유대행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경영여신업자·모집인 등
금융상품자문업자	투자자문업자 등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은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함.

○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상호금융이란 조합원의 돈을 예탁받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방식인 호혜 금융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상호금융기관으로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있음⁴⁾5).

○ 현재 상호금융업권 중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이하 “타 상호금융업권”이라 함)는 현행법을 적용받지 않아 신의성실의무, 판매제한 금지 명령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와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⁶⁾

4) 2025년 10월 기준 상호금융조합·금고의 수는 3,466개임.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총계
조합/금고(개)	862	1,110	90	142	1,262	3,466

5) 각 상호금융 조합·금고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신용사업’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조합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인 ‘공제사업’ 및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처럼 상호금융업권 중 신용협동조합에만 이 법에 따른 금융 소비자보호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상호금융업권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중앙회 및 조합·금고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각 조합·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구분하려는 것임.

○ 개정안 부칙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일을 공포 후 경과한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며, 자료의 기록, 손해배상책임,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규제 형평성을 달성하고, 상호금융업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또한, 중앙회는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6) 현행법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무 및 관련 규제로는 신의성실의무(제14조), 차별금지의무(제15조), 임직원 및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제16조),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 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허위과장광고 금지(제22조), 청약철회권(제46조), 위법계약 해지권(제47조), 판매제한 금지명령제도(제49조제2항) 등이 있음.

직접 판매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각 조합 및 금고는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도 다른 조합·금고가 위탁하는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각 조합·금고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려는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현재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고 타 중앙회와 달리 공제사업도 취급하고 있지 않아 개인과의 금융거래가 없으므로 금융회사의 정의 등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상호금융업권 중앙회별 사업 운영 현황]

구분	신용사업	공제사업	경제사업
농협중앙회	○	○	○
수협중앙회	○	○	○
신협중앙회	○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
산림조합중앙회	×	×	○

(※ 자료: 각 중앙회)

7)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례와 별개로 「산림조합법」상 산림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금융회사의 정의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적용되는 의무 중 완화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예: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임원 구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예외조항 신설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다음으로, 안 제2조제6호바목은 금융회사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같은 호 사목에서 차목까지의 경우 추가되는 대상을 ‘조합 및 중앙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바목에서만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관련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계상 이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

☐ 개정안은 각 조합·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 공표를 해당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생략)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다만,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2조제2항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다.

- 이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있음⁹⁾.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

계량지표 평가항목	비계량지표 평가항목(각 11.7%)
①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사항(28%) ②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2%)	③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④ 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⑤ 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⑥ 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⑦ 성과보상체계 및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 운영 ⑧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평가 대상의 경우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¹⁰⁾에서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

-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공표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공표할 수 있다.
-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금융소비자 보호실태)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지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1.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2.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3. 법 제48조에 따른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
 4.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여 금융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은 2024년 기준 7개 업권의 2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¹¹⁾).

[20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 지정 현황]

업권	은행	생보	손보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계
개사	6	5	4	3	2	3	3	26

(자료: 금융감독원)

□ 반면,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각 조합·금고 및 중앙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도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를 받도록 하되, 각 조합·금고의 보호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는 금융감독원의 한정된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금고의 중앙회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11) 단, 금융감독원은 평가대상 회사를 3개 그룹으로 편성하고, 실태 평가를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주기제(3년 주기)를 운영중인바, '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총 74개사 중 26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

구 분	은행(6)	생보(5)	손보(4)	증권(3)	여전(5)	저축은행(3)
금융회사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iM뱅크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삼성화재 한화손보 KB손보 NH손보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한투증권	신한카드 하나카드 메리츠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현대캐피탈	페퍼저축은행 한투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4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2024. 12.)

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¹²⁾.

12)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가 74개 금융회사인 데 반해, 2025년 10월 기준 상호금융업권 조합·금고의 수는 3,466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개별 조합·금고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금융분쟁조정제도 적용

-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타 상호금융업권의 조합·금고 및 중앙회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u>기관</u> (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3조(분쟁조정기구) ----- ----- ---- <u>기관과 이 법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금융회사</u> ----- ----- ----- -----.

- 현행법 제33조는 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¹³⁾,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33조는 분쟁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¹⁴⁾에 따른 기관

13)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소송에 비해 소요 비용이 적어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기 용이하고 처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

1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한 조정대상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임.

□ 금융 분쟁의 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게 되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한 후, 해당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분쟁조정 절차 관련 현행법 조문]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체 분쟁 건수 대비 분조위 회부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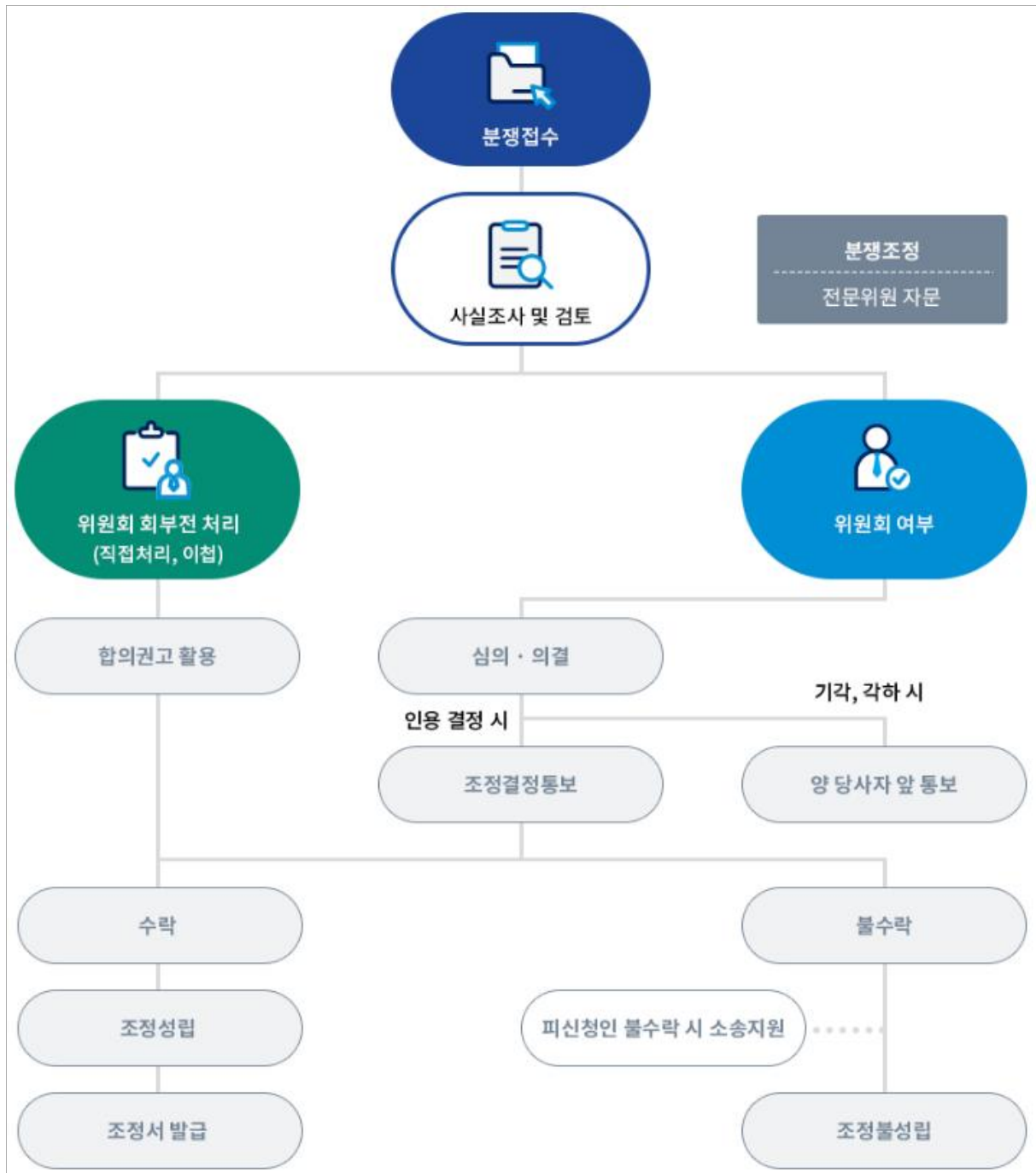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접수건수 (비중)		32,130 (100)	30,495 (100)	36,508 (100)	35,595 (100)	42,265 (100)	19,069 (100)
회부건수 ¹⁾		13 (0.04)	29 (0.10)	18 (0.05)	13 (0.04)	14 (0.03)	8 (0.04)
	조정 성립	10	17	10	2	5	2
	조정 불성립	1	5	4	-	-	-
	기각	2	1	1	1	-	-
	소위원회 개최건수	-	6	3	10	9	6
금융감독원 자체처리 및 이첩 등 ²⁾		32,117 (99.96)	30,466 (99.90)	36,490 (99.95)	35,582 (99.96)	42,251 (99.97)	19,061 (99.96)

주1) 분쟁조정전문소위원회 개최 건수 포함

주2) 분조위 회부건수 외 분쟁민원 수용·불수용 등 분쟁민원 전체 처리 건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 신용협동조합만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고, 농업협동조합 등 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¹⁵⁾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목적 달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의 중앙회 및 각 조합·금고 또한 이 법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 상호금융업권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후적 피해구제수단으로서 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미 자체적인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5) 단, 타 상호금융업권 중 새마을금고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금융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공제사업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6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분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법」 제69조(공제분쟁조정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공제사업 시행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4.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인가 취소 및 영업정지 요구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타 상호금융업권 중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기관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⑤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신 설>	<u>요구할 수 있다.</u>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	--

□ **현행법 제51조제1항¹⁶⁾은 금융위원회가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¹⁷⁾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

-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등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현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 시정명령, 중지명령, 공표명령·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기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등 타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합·금고에 대한 인가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정지 및 인가 취소 처분 권한 역시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타 상호금융업권별 인가(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권한]

구 분	인가권자	인가 취소 · 영업 정지 처분권자
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조합	시·도지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새마을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영업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가 취소)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인가 및 기관제재 권한 관련 타 상호금융업권 법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u>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설립인가 등)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u>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u>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u>시·도지사(전문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4조(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그 조합등이나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변상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의결 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집행의 정지 또는 선거에 따른 당선취소를 할 수 있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125조(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u>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u>주무부장관</u>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u>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u>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6. 조합등에 대한 감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u>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u>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70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3조의5에 따른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u>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u>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사나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 또는 제16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등으로서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3항 각 호 또는 제172조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조합·금고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 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¹⁸⁾의 각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인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18) 개정안은 인가취소 및 업무정지 요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업권에서 새마을금고는 제외하고 있음.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

구 분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 처분	
	현 행	개 정 안
신용협동조합	금융위원장	(좌 동)
농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융위원회 요구 → 관계 행정기관장 처분 (안 §51④, ⑤)
수산업협동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조합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장관(영업 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인가 취소)	(좌 동)

○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인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

우는 ①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
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
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¹⁹⁾),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인가취
소를 요구할 수 있는 위의 경우와 더불어 현행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²⁰⁾”로,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²¹⁾.

19) 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와 관련된 위
반행위로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아닌 타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③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 또한, 개정안 부칙 제7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근거하여 인가 취소를 하거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²²⁾.

□ 개정안은 각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인가 취소와 영업 정지 권한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면서 금융위원회로

21)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내용은 [참고자료 1]을 참조

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2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3항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이나 이 법등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70조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0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이나 이 법등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아니하였을”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여금 이 법에 근거하여 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인가 취소 및
영업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
한 기존의 감독 및 인가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보임.

5.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

- 개정안은 각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조합(금고)을 검사할 수 있도록 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조치 및 임직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의2(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 등) ①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3.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이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의 제69조제1항 또는

	<u>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중앙회장의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장”으로,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한정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조합”으로 본다.</u>
--	---

□ **현행법 제50조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법을

-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①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은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항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영업행위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영업 정지 등 기관
제재 또는 해임요구·직무정지 등 임원 제재를 할 수 있고, 면
직·정직 등 직원 제재를 하도록 그 직원이 속한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음²⁴⁾.

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한정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 한편, 상호금융권의 경우 현행법 제50조에 따라 금융당국 검사·보고 규정이 적용되는 것 외에도 각 상호금융조합의 개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서는 각 중앙회장의 소속으로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 조합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견책·변상 등의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조합은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를 1개월 이내에 할 것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상호금융업권 법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18조(조합감사위원회) ①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① 위원회는 회원의 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u>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u> ②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산 및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u>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④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서는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9조의2제1항에서는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고감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⁵⁾.

□ 개정안은 상호금융조합의 중앙회장이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그 직원에게 조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기관 제재를 하거나 임직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²⁶⁾ 조합이 과징금·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²⁷⁾.

○ 또한, 개정안은 기관 제재를 하거나 임직원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²⁸⁾ 규정되어 있는 청문, 이

25) 「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26) 중앙회장이 내릴 수 있는 기관 제재 조치에 인가 취소는 제외되어 있음.

27)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 제66조의3에 따른 특례에 따라 안 제56조의2에서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으로,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조합감사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회”로 봄.

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제55조(이의신청) 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등록의 취소,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또는 조치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49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

의신청, 처분·조치 기록 등 제재 대상 조합 또는 임직원의 불복 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25년 10월 기준 3,466개에 달하는 상호금융업권의 조합·금고를 금융당국에서 모두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각 중앙회로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조치(요구)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한 효율적인 감독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융위원회는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되므로 각 중앙회장에게 퇴직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권한 역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해당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⁹⁾.

○ 또한 자구 정정사항으로, 안 제56조의2제3항 중 “조합이”를 “조합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라 처분 또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5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53조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자기에 대한 제49조 또는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금융위원회는 중앙회장의 조치에 대하여 현행법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규정을 추가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중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하여는 감독 및 처분 권한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신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에 부여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6조의3(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제49조제2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3항·제4항은 제외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으로,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조합감사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본다.

□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검사·감독 및 처분 권한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동 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섭되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됨.

○ 그러나 상호금융업권 중 새마을금고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달리 그간 신용·공제사업 관련 감독·검사 및 조치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해왔음.

[현행 상호금융업권 감독·조치 체계]

구 분	감독기관			인 허가	검 사 실 시 기 관
	경 제 사 업	신 용 사 업	공 제 사 업		
신 협	금 융 위				금 감 원, 중 앙 회
농 협	농 립 부	금 융 위 (건 전 성 감 독 에 한 정)	금 융 위	농 립 부	금 감 원, (신 용 사 업 부 문) 중 앙 회
수 협	해 수 부		해 양 수 산 부	해 수 부	
산 립 조 합	산 립 청		산 립 청	산 립 청, 시·도 지 사	
새 마을 금 고	-	행 안 부		시·군·구	행 안 부, 중 앙 회

□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회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기존의 감독체계를 인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역량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감독 및 처분 권한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할 것임.

○ 다만, 감독·조치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안 제66조의3제1항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면서
법 제49조제2항³⁰⁾(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금지 등)의 적용시에는
기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
는데, 이는 특정 금고의 영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문제
되는 특정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판매와 연관된 것으로서 금융위원
회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8

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으
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
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1의2.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의3.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의4. 법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인 금융소비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 나.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다.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라. 금융소비자에게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7.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8.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10.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1의2.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 11의3.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
12. 법 제2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3.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경우
15.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6.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17.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8.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않은 경우
19.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21. 법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23.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24. 법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5. 법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26. 법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7. 법 제4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지 않은 경우
28. 법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비용을 요구한 경우
29.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1. 법 제4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